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 간음)

피 고 인 [REDACTED]

검 사 [REDACTED]

변 호 인 변호사 조효동(국선)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.

다만,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.

피고인에게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.